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2. 3. 22.

제안자 : 이근성 위원외

1. 수정이유

도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규정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
수정하려는 것임.

2. 수정 주요골자

- 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중 금원의 충당이라는 규정 삭제
- “할부매입 하는 때 금원의 충당” ⇒ “할부매입”으로 수정
(안 제10조)

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0조중 “할부매입 하는 때 금원의 충당”을 “할부매입”으로 한다.

수정안 대비 표

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10조(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자가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내버스운송사업·시의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를 신규등록·이전등록 및 할부매입 하는 때 금원의 총당 등의 사유로 저당권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.</p>	<p>제10조(운송사업지원을 위한 감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할부매입----- ----- ----- -----</p>